공정사회, 예비시험 도입이 시작이다.



강용 석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18대 국회의원(서울 마포구 을)

내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다.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명목으로 로스쿨이 도입된 후 시행되는 첫 시험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로스쿨 학생들의 법학 실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 리가 들리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과행적 행태가 전방위적으로 감지된다. 도 입 전부터 예견되었던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로스쿨 25개 로스쿨 3학년 1677명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지난 7월에 있었다. 이에 대한 신문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선택 형 부문의 평균이 과락 기준인 40점대에 근접한 점수가 나온 것이다.

결과를 접하고 시험관리자들은 난이도를 더 낮춰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는 한편,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평균 점수의 외부유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로스쿨 측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며 실력이 저조한 학생들의 시험 응시 자체를 막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5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여름방학 때 최소 250명 이상이 학원을 이용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 비율로만 따지면 사법시험 응시자의 학원 수강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考試界 2011/12 83

'법학부 시절 교육 방식과 로스쿨 교육이 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탄식과 '현실적으로 비법대 출신들이 변호사 자격을 따는 데 3년 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도 들렸다. 이는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부분이었고 필자도 소리 높여 경계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덮고 보는 변호사시험을 꼭 잘 봐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게 아니'라며 '로스쿨생들은 전반적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는 상위 1%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인 변호사시험만 무난히 통과하게 해주면 앞으로의 실무에서 그 잠재력을 뽐낼 수있다'는 서울 소재 모 로스쿨 원장의 언급은 로스쿨 체제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의견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로스쿨 학생들의 법학실력 논란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로스쿨 입학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가난한 천재들'의 울분이다. 로스쿨에 대한 여러 문제 중 본질적인 점 몇 가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재차 강조하고 싶다.

먼저 로스쿨 학비가 지나치게 높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장학금 제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현 제도를 옹호하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가난이 무엇인지 모를 때 주장할 수 있는 논리다. 변호사가되기 위해 반드시 7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가될 엄두를 못낸다. 단순히 학비 때문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는 7년 동안 살아갈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에 매진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라는 요구는 무책임하다.

한편 장학금 도입 취지 자체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장학금을 사립학교가 부담하든 국가가 부담하든 그 재원은 결국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 산층으로부터 충당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졸업 후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 직업 생활을 영위할 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의 재원을 지원할 당위성은 희박하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로스쿨 진학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84 考試界 2011/12

또 어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 학력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례적인 조치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미국변 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제한하는 주는 전체 50개 주에서 19개 주에 불과하다. 나머지 31개 주에서는 비인증로스쿨이나 통신강좌이수는 물론 외국의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로스쿨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 면허시험도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시험에서도 응시 자격을 특정 학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최근에 제기된 로스쿨의 문제점과 도입 전부터 제기된 위에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법적 지식과 실무 활용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응시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10\sim2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예비시험제도는 다양한 양질의 법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 즉, 현행 로스쿨제도의 위헌적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로스쿨 출신과 비로스쿨 출신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보다양질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예비시험제도가 낭인을 양산한다는 오해도 옳지 않다. 예비시험 선발인원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응시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론 시험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사교육의 등장 가능성은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이나로 스쿨 졸업생이 보는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이다.

가난해서 3년간의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능력만은 로스쿨 졸업 자와 같은 정도에 이른 우수한 자원에게 법조계 진출의 최소한의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다. 제도도 신분과 자격제한의 장벽 대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내주어야 그 제도가 더욱 건실해질 수 있다.

考試界 2011/12 85